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159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중 소 기 업 청 장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그간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에서 제기된 ‘시행세칙’ 개정 수요를 검토 반영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조직개편, 타 소관 법령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시행세칙’에 반영하고 일부 오류사항을 정정

### 2. 주요내용

#### 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 확대

- 1) 국내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 보건신기술 인증제품 포함
- 2) 녹색인증제품 포함
- 3)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포함
- 4)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특허권자에 한함) 포함

나. 성능인증 대상 제품 조정(추가 및 삭제)

- 1) 소방우수품질제품, 방재신기술 제품, 녹색기술 인증, 보건신기술 제품, 민·관공동R&D 성공제품을 별표1에 추가
- 2) 제도가 폐지된 GQ(Good Quality)인증과 GS(Good Software)인증으로 통합된 ES(Excellent Software)인증을 별표1에서 삭제
- 3) 타 소관 법령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  
(제3호)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5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제15호) :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

3. 의견제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공공구매제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http://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  
(전화 : 042-481-4569, Fax : 042-472-3294)